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 화 : 2094-0470 ~ 5



제1656호 2010. 6. 30.

규 칙

제608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제609호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3
제610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23

공 고

제2010-435호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 공시	27
제2010-436호 2010년 개별주택가격 조정 결정 · 공시	29
제2010-442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30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094-0474 / FAX: 2094-0479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3일 접수 →
 D-2일 편집·교정 →
 D-1일 편집·교정 →
 D일 발간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	--	--	--	--	--	--	--	--	--	--



규 칙

서울특별시중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우리 구 금고지정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구 금고 선정을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금고 약정기간 : 4년

나. 금고의 수 : 단일금고 지정(특별회계, 기금의 경우 별도 금고 지정 가능)

다. 금고 지정방법 : 공개경쟁 원칙, 아래의 경우 수의방법 가능

- 1) 서울특별시의 금고 금융기관을 구의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
- 3) 공개경쟁에 의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약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처음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 민간전문가 과반수 이상
- 2) 수의방법으로 금고 지정을 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침
- 3)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방법, 금융기관 평가에 필요한 사항, 공개경쟁 시 제출자료의 확인 및 평가,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서울특별시중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금고의 수) 구청장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기금이 새로 설치되거나 금고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구청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의 금고 금융기관을 구의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3. 공개경쟁에 따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약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 관리능력 등 금고 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처음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제6조 단서조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구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구금고 업무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구 소속 공무원 중 금고업무 주관국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를 주관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등 회의록을 작성·비치하
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
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등) 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한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금고의 지정)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금고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구보·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이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금고운용 보고) ①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 회계·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점) -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20)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6)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6)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6)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6)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5)
	나. 구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I.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1-가,나)의 경우는 평가 세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상한의 60% 이상으로 하고,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 내에 있어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평가 세부항목별 금융기관의 순위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 하한을 배점 상한의 60%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제2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7점)
 - ※ BIS 10% 이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처리 가능
 -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6점)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6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6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6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점)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나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점)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서울특별시중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중량구청장

서울특별시중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쓰레기 배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자체 방침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규칙에 일치시키고, 조례개정으로 변경된 연탄재, 재활용품 배출방법과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항목에 사용 후 버리는 “껌”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연탄재는 영업장에서 사용한 것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고, 일반가정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한 것은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안 제2조제1항)

나. 재활용품은 투명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 배출요일에 함께 배출(안 제2조제1항)

다. 일반주택가나 골목길, 이면도로변은 정해진 요일의 18:00 ~ 20:00사이에 배출하고, 가로변은 정해진 요일 22:00 ~ 다음날 01:00사이에 배출.

(안 제2조제2항)

라.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항목에 사용 후 버리는 껌을 추가하고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항목에도 껌을 추가하여 명시(별표)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서울특별시중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중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중 “서울특별시중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중량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량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생활폐기물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연탄재 : 비닐봉투 등에 담아 묶어 배출. 다만,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어 배출.
2. 가내공업 생활폐기물 : 쓰레기 종류별로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3.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료폐기물과 완전 분리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4. 사업장배출 생활폐기물 : 가내공업 폐기물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5. 재활용품 : 조례 제2조제8호 별표 1에 따라 분리보관용기 등에 담아 배출

②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는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배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량제폐기물, 재활용품 등 : 정해진 요일 18:00부터 20:00 사이에 배출. 다만, 가로변은 22:00부터 다음날 01:00 사이에 배출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 (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별표 3과 같다.

② 위반행위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육하 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신고자 1명당 월 20건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접수)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지급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부 과 항 목	금 액(천원)			비 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 (법 제8조)				
가.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꽂초, 껌,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30	30	3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	150	200	
다. 조례 제2조제7호의 대형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70	100	
라.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150	200	
마.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	300	500	
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건축물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법 제25조 폐기물 처리업자, 법 제46조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외)	500	700	1,000	매 건마다 부 과
2. 조례에서 정한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 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조례 제7조를 위반한 자	100	200	500	
나. 조례 제16조를 위반한 자	100	200	500	
다. 다만, 조례 제16조 중 관급 규격봉투를 묶지 아니하고 배출한 자	50	50	50	
3.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법 제68조제3항 제7호)	1,000	1,000	1,000	
4.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9조제4항)	1,000	1,000	1,000	매 건마다 부 과

부 과 항 목	금 액(천원)			비 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6.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처리 요금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25조제9항)	300	500	1,000	매 건마다 부 과
7. 교육 미 이수자 및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자(법 제35조)				
가.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기타 대통령 이 정하는 폐기물처리 담당자가 교육 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0	400	500	
나. “가”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자 를 고용한 자가 그 해당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1,000	

- 비고 : 1.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 동안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별표 3]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지급 기준(제5조 관련)

지 급 항 목	금 액
1. 담배꽂초, 껌,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	3,000원
2. 비닐봉지나 보자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	20,000원
3.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	20,000원
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않고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	20,000원
5. 대형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	20,000원
6.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	40,000원
7.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	100,000원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중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량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등) ①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생활폐기물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탄재 : 플라스틱이나 철재용기등 운반이 용이한 용기에 담아 배출 2. 가내공업 생활폐기물 : 쓰레기 종류별로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3.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 「의료법」에 의한 의료적출물과 완전 분리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4. 사업장배출 생활폐기물 : 가내공업 폐기물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5. 재활용품 : 조례 제2조8호 별표1에 의하여 분리보관용기에 담아 배출 <p>②생활폐기물의 배출자는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배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량제폐기물 : 매일 20:00부터 익일 05:00 사이에 배출 (단, 재활용품 배출은 제외) 2. 재활용품 : 매주 화요일 전일 20:00부터 익일 10:00 사이에 배출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중량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량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이 규칙은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생활폐기물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탄재 : 비닐봉투 등에 담아 묶어 배출. 다만,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어 배출. 2. 가내공업 생활폐기물 : 쓰레기 종류별로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3.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의료적출물과 완전 분리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4. 사업장배출 생활폐기물 : 가내공업 폐기물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5. 재활용품 : 조례 제2조8호 별표1에 의하여 분리보관용기에 담아 배출 <p>②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는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배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량제폐기물, 재활용품 등 : 정해진 요일 18:00부터 20:00 사이에 배출. 다만, 가로변은 22:00부터 다음날 01:00 사이에 배출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을 설치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p> <p>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은 당해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상차가 가능하고 쓰레기가 흘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0.5~1.5m³용량의 견고한 용기를 동당 1개씩 설치</p> <p>2. 사업장계생활폐기물은 자동상차가 0.5~1.5m³용량의 금속 또는 강화 플라스틱 용기를 사업장계생활폐기물 배출처 내에 설치</p> <p>3.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규격·재질 등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p>	<p><삭제></p>
<p>제4조(과태료부과기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p>	<p>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_____ ----- 별표 2와 -----</p>
<p>제5조(포상금 지급 등) ①조례 제6조의2에 의한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이하"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별표3과 같다.</p> <p>②위반행위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포상금은 당해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신고자 1인당 월 20건까지 지급할 수 있다.</p> <p>④구청장은 위반행위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신고(접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⑤위반행위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지급한다.</p>	<p>제5조(포상금 지급 등) ① _____에 따라 _____ (이하"위반행위"라 한다) ----- 별표 3과 -----</p> <p>② _____ _____ 따라 _____</p> <p>③ _____해당 _____에 따라 _____ _____ 1명당 _____</p> <p>④ _____ 위반행위 신고를 _____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_____ 무단투기 신고(접수)대장을 _____</p> <p>⑤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_____</p>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별표 2]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부 과 항 목	금 액(천원)			비 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 (법 제7조)				
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꽂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30	30	3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보자기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	150	200	
다. 조례 제2조제7호의 대형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70	100	
라.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150	200	
마.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	300	500	
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축물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법제2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법 제26조 폐기물 처리업자, 법제44조의2 폐기물 재활용처리 신고하는 자는 제외)	500	700	1,000	매건마다 부 과
2.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정한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0	200	500	
나. 조례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0	200	500	
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중 관급 규격봉투를 묶지 아니하고 배출한 자	50	50	50	
3.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24조 제3항, 법 제41조)	1,000	1,000	1,000	
4.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 제4항)	1,000	1,000	1,000	매건마다 부 과
5.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6조제2항)				
가. 조례 제2조제2호의 생활 폐기물 배출자	100	300	500	
나. 단, 조례 제2조제2호중 관리자 또는 대표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선임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자 및 조례 제2조제3호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300	500	1,000	
6.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처리 요금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법 제26조제1항)	300	500	1,000	
7. 교육 미이수자 및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자 (법 제40조)				
가.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설계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0	400	500	매건마다 부 과
나. "가"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자가 그 해당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1,000	

부 과 항 목	금 액(천원)			비 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 (법 제8조)				
가.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꽂초, 껌,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30	30	3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	150	200	
다. 조례 제2조제7호의 대형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70	100	
라.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150	200	
마.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	300	500	
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축물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법 제25조 폐기물 처리업자, 법 제46조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외)	500	700	1,000	매 건마다 부 과
2. 조례에서 정한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조례 제7조를 위반한 자	100	200	500	
나. 조례 제16조를 위반한 자	100	200	500	
다. 다만, 조례 제16조 중 관급 규격봉투를 묶지 아니하고 배출한 자	50	50	50	
3.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법 제24조제3항제7호)	1,000	1,000	1,000	
4.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9조제4항)	1,000	1,000	1,000	매 건마다 부 과
5. <삭제>				
6.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처리 요금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법 제25조제9항)	300	500	1,000	
7. 교육 미 이수자 및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자 (법 제35조)				
가.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 설계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0	400	500	매 건마다 부 과
나. "가" 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자가 그 해당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1,000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지급 기준(제5조관련)		[별표 3]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지급 기준(제5조관련)	
지 급 항 목	금 액	지 급 항 목	금 액
1. 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	3,000원	1. 담배꽂초, 껌,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	3,000원
2. 비닐봉지나 보자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	20,000원	2. 비닐봉지나 보자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	20,000원
3.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	20,000원	3.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	20,000원
4. 휴식 또는 <u>행락</u>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않고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	20,000원	4. 휴식 또는 <u>행락</u>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않고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	20,000원
5. 대형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	20,000원	5. 대형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	20,000원
6.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	40,000원	6.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	40,000원
7.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	100,000원	7.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	100,000원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1. 제안이유

불법주차 단속차량의 의견진술 제출에 따른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화하고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의견진술심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기능 (안 제3조)

-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기준 결정
- 2) 과태료의 감경여부·정도에 관한 사항 등 기준 결정

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4조)

- 1) 교통관련 학자나 시민단체 임원 등 외부인원 20% 이상,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①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 위원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 처리기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랑구청에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 또는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지도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0-435호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공시합니다.

2010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시 개요

- 2005년 개별주택가격 정정 건수 1호 (공시기준일 : 2005. 1. 1)
- 2006년 개별주택가격 정정 건수 1호 (공시기준일 : 2006. 1. 1)
- 2007년 개별주택가격 정정 건수 1호 (공시기준일 : 2007. 1. 1)
- 2008년 개별주택가격 정정 건수 1호 (공시기준일 : 2008. 1. 1)
- 2009년 개별주택가격 정정 건수 1호 (공시기준일 : 2009. 1. 1)
- 2010년 개별주택가격 정정 건수 2호 (공시기준일 : 2010. 1. 1)

2.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 개별주택가격

3. 개별주택가격 비치장소

중랑구 세무1과에 비치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공시내역과 같으며,
중랑구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

4.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 세무1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구청 세무1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시행일

이 공시는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기타 문의사항

세무1과 재산평가팀(2094-13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별주택가격 조정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준용되는 동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2010년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공시합니다.

2010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개별주택가격 개요

- 공시기준일 : 2010. 1. 1.
-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건수 : 12호

2.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 개별주택가격

3. 개별주택가격 비치장소

중랑구 세무1과에 비치하고 있는 2010년 개별주택가격 조정 결정 공시 내역과 같으며, 중랑구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

4. 시행일

이 공시는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기타 문의사항

세무1과 재산평가팀(2094-13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하고 아래와 같이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개발과(☎2094-2173) 및 도로과(☎2094-2695)

다. 도시관리계획(안) 열람내용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조서

구분	시 설 명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	12	집산 도로	160	면목동 5-16	면목동 5-36	일반 도로	-	-	

2) 결정사유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면목동 5-16 ~ 면목동 5-36 ○ 규모 : 폭원 12m / 연장 160m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도로)이 미비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금회 도로폭 12m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추진, 차량 통행 및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편익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촉진코자 함.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